

'25년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사서직 수당)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의견

사서수당 조정 요구서

‘도서관’은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중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사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등 포함)을 이수하고 사서자격증(국가 자격)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13,939명)이나, 타 직렬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함. 또한, 다양한 이용 목적에 따른 도서관과 사서의 업무는 증대되고 있으나, 유사 직렬 및 동일 직렬에서조차 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음

※ 1982년 이후 42년간 사서수당 동결

※ 동일 직렬임에도 입법부 및 유사직렬과 수당 인상 및 인상 연혁 등에서 큰 차이

※ 도서관 연간 이용자 1억 7500만여 명, 출처: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 개요

- 단체명 : 한국도서관협회
- 수당구분 : 특수직무수당
- 요구구분 : 인상 및 지급대상 조정
- 요구내용 : 사서직 공무원(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인상
- 요구이유
 - 도서관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사서는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 디지털문화 가속화와 AI시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의 대거 등장로 인한 전문성 및 특수성 강화
 - 불특정 다수의 정보요구를 수행하는 등 다목적 기능수행에 따른 감정노동 심화
 - 사서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 지난 42년간 사서수당 동결
 - 동일 직렬임에도 입법부 및 유사직렬과 인상 및 인상연혁 등에서 큰 차별

○ **신구조문대조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현행	개정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152,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132,000원 이하

※ **사서수당 조정 요구 이유 상세내용**

- **(다목적 공공기능 수행)** 도서관의 사서는 연령과 성별, 직업, 신념, 장애, 인종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정보의 수집·정리·제공·보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아카이브는 물론 평생교육과 독서·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다목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다양한 양태로 분출되고 있음
- **(안전 사각지대)** 도서관 서비스는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로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은 물론 각종 감염병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감정노동자로서 노동안전보건의 침해에 대한 보호에 취약하며, 사서업무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위험 직무가 되었음
-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량 증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변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대차와 장애 및 일반 택배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각종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빅데이터와 AI·디지털 가상의 공간까지 업무 영역이 확장되는 등 최신 환경변화에 적합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인화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 사서들의 압박감과 신규 업무들이 증가 추세임
-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업무 분야 증가)**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 활동 지원은 물론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독서·정보교육 확대 등 1교 1인 사서가 대부분인 특성에서도 정보 활용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수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음

- (비정규직 양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제, 총액임금제에 이어 기준 인건비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약직 및 시간제 인력 활용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이 도서관의 고유한 업무 외에 비정규직 인력관리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 (타직렬 및 소관부처 상이) 또한, 타 전문직 수당의 단계적 인상에 비해 1982년 이후 42년간 수당이 동결되어 있으며, 입법부 소속 국회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어, 직렬 및 소속에 따른 형평성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주관부처 인상 협의) 특히, 한국도서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 담회 진행(2024. 1. 10.) 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입법부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부 국가직 및 지방직 사서수당 또한 국회도서관 도서수당을 기준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수당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상기 이유로 1982년 이후 42년간 동결된 사서수당을 조정할 것을 요구함

2 소요자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 각 기관별로 산출해서 제출할 것 / 추후 도서관협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소요예산 산출 예정임			

3 대상자 세부 현황

자치단체명	근무기관명	근무부서	직류	인원	담당업무 세부내용
해당사항 없음					

4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경제성 평가와 도서관 업무 활동과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분석하는 성과 비율

분석 모형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2020년에 추진함

- 아래 표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서 인건비의 부가가치비율은 평균 8.63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당 인상의 필요성과 충분한 수의 사서 확보가 개별 도서관 수익률 증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하는 결과임

범주	평가지표(비용 투입 대비)	평균(배율)
수익성	예산대비 수익율	2.23
	사서인건비의 부가가치율	8.63
성장성	총이용 증가율	0.11
	도서대출건수 증가율	0.02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율	0.09
활동성	장서회전율	0.98
	비활용자료 비중	0.55
안정성	사서 1인당 보유 장서 수	16.49

※ 참고문헌: 한국도서관협회, 2020.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사서의 가치 평가 -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 연구보고서

○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에서 공공도서관이 24.03개 관으로 다른 문화시설보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박물관: 17.75개 관, 미술관: 5.56개 관, 생활문화센터: 3.67개 관, 문예회관: 5.29개 관 등
- 전국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시설은 공공도서관임(2022년 기준 약 1억 7천 5백만 명 이용)
- 전국 문화기반 시설별 이용자 수(2022년 기준)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학관 :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년 기준)
- 영화관 : 영화진흥위원회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2022년 기준)
- 야구장 : 2023년 KBO 연감
-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휴관일을 제외한 연평균 도서관 1관당 개관일 수는 290일이며,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는 142,160명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0,353명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함.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정보문화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도서관연감(2022년) 기준

구분	1981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2년
도서관 수	120	231	400	703	1,236
사서 수	299	1,104	1,987	3,810	5,756
이용자 수	17,163,774	25,007,833	80,913,864	162,851,171	175,709,852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총인구수)	128,133 (38,311,834)	39,717 (43,847,668)	23,927 (47,542,000)	13,062 (49,765,000)	8,937 (51,439,038)
사서수당	- 월 30,000원 이하(5급) - 월 20,000원 이하(6급 및 사서교사) <u>※ 1982년 2월 9일 최초 제정 이후 42년간 변동사항 없음</u>				

※ 『한국도서관연감(1981, 1990, 2000, 2010)』 및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23) 기준

- 공공도서관 기준

- 세부 기준: (사서 수: 정규직), (이용자 수: 자료실 이용자 수), (총인구수: 행안부 자료)

- 1981년 이용자 수 및 봉사대상 인구수는 1984년 자료임.

(당시 집계된 통계가 없어 가장 최근인 1984년 자료를 활용)

- 2000년대부터 공공도서관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사서 수 및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임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10년 단위로 약 1만 명씩 감소 추세로 보이나 현실은 신설 도서관의 증가와 인구감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자책 이용자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방식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다목적 기능수행에 따른 감정노동 심화와 각종 위험에 노출

- 도서관 존재가치는 불특정 다수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것. 따라서 이용자의 성희롱과 협박, 폭력, 지속적 악성 무고성 민원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도서관 서비스 특성상 업무공간과 이용자 열람공간이 함께 존재하여 최소한의 신변 보호도 어려운 근무환경임. 이로 인해 많은 현장 사서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충으로 이직과 퇴직을 하거나 고려하고 있음

※ 심민석(2017), ‘도서관 문제이용자와 사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2019)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67.9% 이용자로부터 폭언, 14.9% 성희롱(성추행) 경험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2024-2028) 코로나 19 이후 도래한 ‘뉴노멀 시대’ 대응 및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혁신 모색(17p.)
- 국민이 아주 편하고, 쉽게 찾는 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임. 또한, 도서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가 강화되며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연령, 성별, 직업, 신념,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사서의 업무는 아주 쉽게 사서의 감정노동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노동안전보건의 침해 및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도서관 연 이용자 수(1억7천5천만 명), 박물관 연 관람 인원(6,200만 명), 미술관 연 관람 인원(1,600만 명), 문예회관 연 이용자 수(990만 명), 지방문화원 연 참여자 수, 문화의 집 연 이용자 수(60만 명)

- 코로나 19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로 비대면 책 열람 대출 서비스(북 드라이브(워킹 포함) 스루, 안심 도서) 외에도 도서관형 창작·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으로 도서관 제공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진단 업무가 급증하였고, 홍보나 마케팅 또한 SNS나 서포터즈 운영 등 새로운 방식을 경유하게 되었음. 하지만 이로 인한 업무 가중 및 불특정 이용자 응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근무환경 내 위험요소 증가 등으로 신체적 위험도 역시 커지는 상황
- 오늘날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수집·정리·제공·보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에 더해 지식정보센터, 문화향유 거점, 평생학습 산실, 정보해득력 서비스 강화, 지역 사랑방 또는 커뮤니티센터, 지역 아카이브(향토자료 수집 등) 구축,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배이스캠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책(EBook) 대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대되는 등 도서관 사서 직원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호소
 - ※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서직 직무변화 현황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보고서』
 - 2022년 사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년간 업무량 증가했다는 비율 66.1%,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30.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38.5%), 신기술도입 및 디지털화로 신규 콘텐츠 증가(8.4%) 응답
-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특히 지역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은 주말(토, 일요일) 개관에 따른 근무와 개관시간 연장 등으로 심신의 피로 누적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크게 손상되고 있음
- 대다수 도서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 지원과 문화, 독서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 개발과 실행, 대민 서비스 증가, 육체적 심리적 피로 증가 등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

○ 새로운 업무의 대거 등장에 따른 전문성 및 특수성 강화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 환경변화와 대응(24p.)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2024-2028),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33p.)
-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정보 유통 보편화로 온라인/디지털 형태 자료의 선정과 평가, 라이선스 계약 실무, 컨소시엄 참여와 협상, 온라인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 저작권 이해와 적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롭게 등장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유통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해득력 업무가 모든 도서관의 필수업무로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정보검색 지원, 디지털 자료실 운영, 디지털정보 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또한, 도서관이 정보기관의 역할을 넘어 문화기관, 교육기관, 커뮤니티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메이커 스페이스, 영상제작 스튜디오, 복합문화공간 등 소통, 협력, 창업, 체험을 위한 공간들이 신설되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사서들은 직무역량 개발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상황임
 - ※ 김초혜, 김기영(2021).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사서 전문성의 매개효과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4), 83~112
- 더불어 향후 도서관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 융합형 도서관 서비스가 지속해서 개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서들은 담당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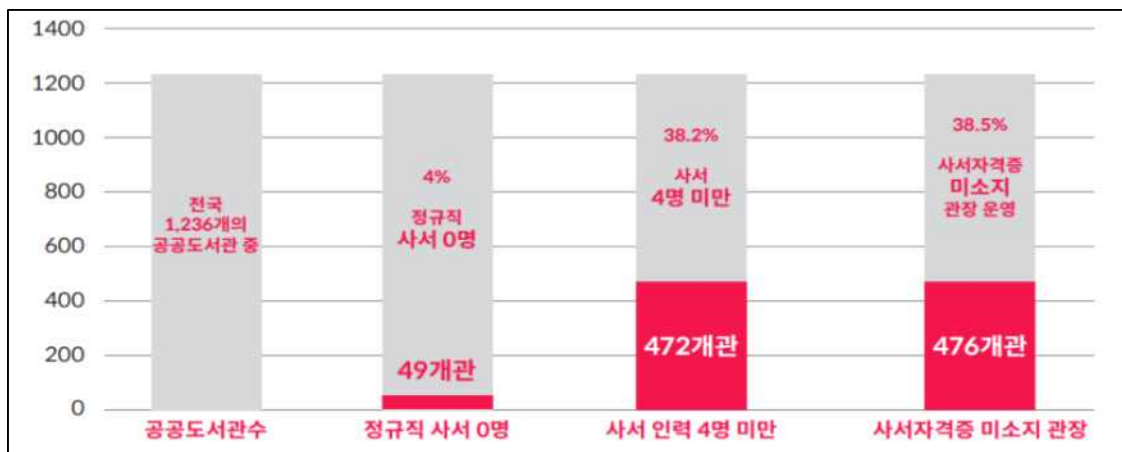
무 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기 계발 및 지속적인 재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접 도서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사서에게 지급하는 사서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사서들이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또한, 국가자격증인 사서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서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1급 정사서와 2급 정사서에 대해 가산급 지급 규정 검토가 필요함

○ 사서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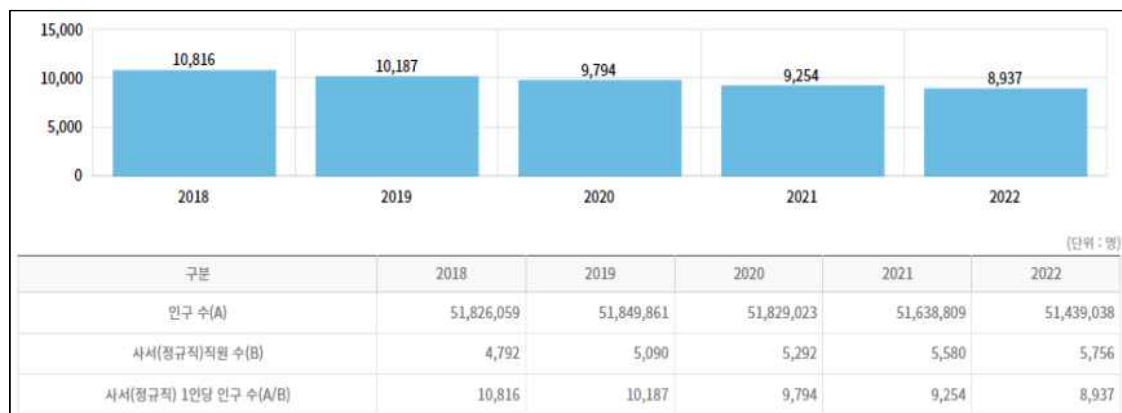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2024-2028), 지역 맞춤형 도서관 활력 지수(L-ESG) 개발 및 적용 관련 ‘사회적 도서관으로서 인프라 내실화’ 전략을 위한 13개 과제 안 중 하나로 ‘도서관 사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제시(22p)
- 총정원제, 총액임금제와 기준인건비 등 제도적 한계로 도서관 사서직 확충은 미미한 수준으로,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 또는 시간제 등 비정규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어 비정규직 비율이 약 25%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규직원에게 관리 업무가 추가되고 있음. 특히 도서관법상 도서관 등록을 위한 공립 공공도서관 기준 사서 수는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하나, 4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매우 많아 인력이 부족함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음. 또한, 관리자로서 전문가여야 할 관장의 사서자격증 미소지자가 있거나, 관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도서관도 있어, 관리 인력으로서의 사서직 관장도 부족한 실정임
-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사서 인력 및 관장의 사서자격증 미소지 현황
(2023년 국가도서관통계 기준)

■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 및 관장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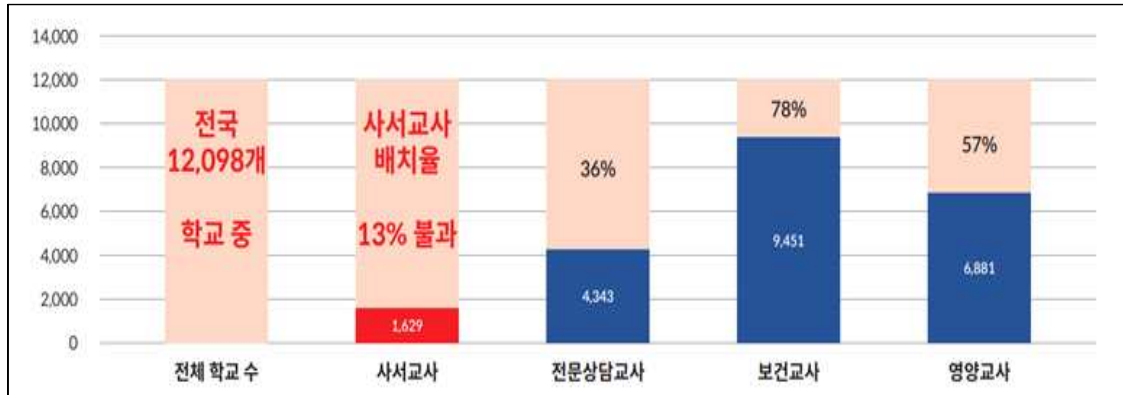


-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현황(2023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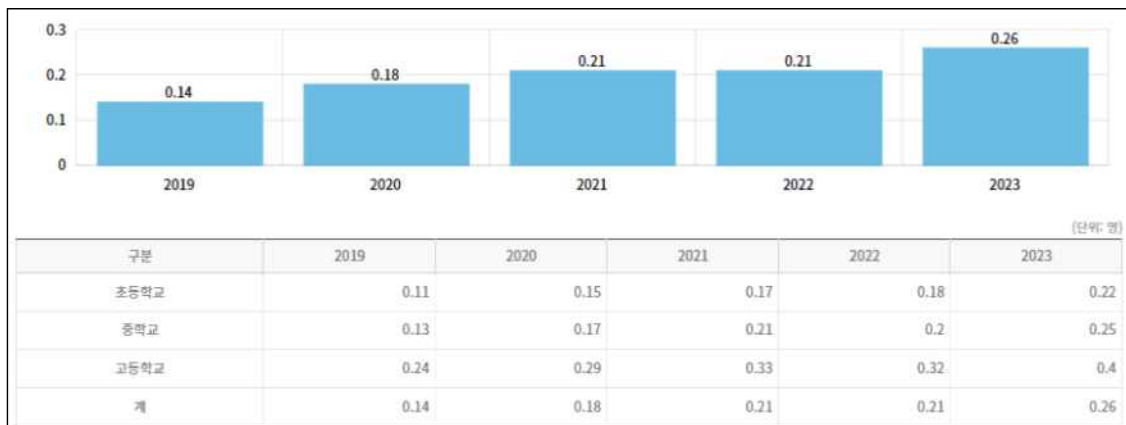
■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 타직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서교사(2023년 교육통계 기준)
 - 전체 학교 대비 비교과 교사별 배치현황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인력(2023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 1관당 사서교사 수



- 위 표와 같이 공공도서관 사서(정규직) 기준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사서 1명당 약 9,000명의 이용자 대상 수는 모든 국가의 전체평균 수치(인구 1,000명당 0.33명)*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참고: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윤희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42권 제1호), p.95.

- 특히, 학교도서관 1관당 사서교사 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0.22명, 중학교는 0.25명, 고등학교는 0.4명으로 1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처럼 사서 및 사서교사 부족과 사서 1명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많음에 따라 업무가 지속해서 가중되고 있음

○ 사서교사 업무 증대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학교도서관의 질적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9p.),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17p.)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2024~2028),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11p.),
-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도서관 활용과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제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등에 따라 교과수업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강화, 범교과* 학습 주제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확대되면서도 학생을 비롯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에 대한 인문 독서교육을 사서교사 주도형 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등 사서교사의 업무 분야가 넓어지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시기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악영향과 저하되고 있는 문해력에 대응할 필요가 강해짐. 이에 따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교육 활동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2024년부터 적용되면서 사서교사 업무 분야가 확대됨
 - 학교 자율과정 도입으로 독서교육을 자율과정으로 지정하는 학교나 디지털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의 경우 사서교사가 독서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진행하는 상황으로 업무 분야 확대
- 실제로 도서관 협력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 흥미, 성취도 등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기에 도서관 협력 수업을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함

※ 강예빈, 2022. '사서교사의 도서관 협력수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 보수 및 유사직무 측면

○ 사서직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형평성 문제

- 일반직 공무원 직급상 행정직군에 속한 사서 직렬은 동일하게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 직렬(전산·사회복지 등)에 비해 지급액이 적어 사서직 사기 저하의 결정적 요인이며,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대두됨

예시) 사회복지 : 월 7만 원 + 가산금(자격증 소지자)
전산업무 :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5만 원-2만 원 지급

- 입법부 소속 국회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이 지급받고 있는 도서수당과도 차이가 커, 입법부, 행정부, 지자체 차원의 수당 금액 통일을 위한 인상이 필요함.

■ 국회공무원 수당규정 상 도서수당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구 분	월지급액
도서관장	444,000원
1급(상당)공무원과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351,000원
2급(상당)공무원과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260,000원
3급(상당)공무원과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247,000원
4급(상당)공무원과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별표 10의2의 가급 해당자	218,000원
5급(상당)공무원 및 연구관과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별표 10의2의 나급, 전문경력관 가군	152,000원
6.7급(상당)공무원 및 연구사와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별표 10의2의 다.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132,000원
8.9급(상당)공무원과 이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별표 10의2의 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113,000원

○ 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한 개선이 필요함.

- 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다른 교사직과 비교해 볼 때 차별

예시) 영양교사, 보건교사: 월 30,000원

특수학교 교원, 특수교원 : 월 7만원 ▶ 월 12만원(2024년 5만원 인상)

- 수당 지급 예외조항 개선 필요
 - 교육행정기관(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이나 독서 관련으로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예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행정기관 근무 시에도 지급

3. 연혁 측면 ※ 세부자료 별첨(서식은 참고1 참조)

○ 사서수당 42년간 동결

- 사서직공무원 수당은 1982년(국립중앙도서관은 1970년)에 신설되었으나, 지급금액(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은 지난 42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았음. 반면 다른 직종 및 직렬의 수당은 몇 차례 인상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음.

수 당 명	지 급 액	
	1982년도	현재
사서수당	20,000원 ~ 30,000원	20,000원 ~ 30,000원 이하
기술정보수당	10,000원 ~ 25,000원	20,000원 ~ 60,000원 이하
연구업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35,000원 ~ 55,000원	80,000원 이하
민원업무수당	20,000원	50,000원 이하

○ 사서교사 수당, 늦은 출발에도 차별

- 다른 교원에 비해 수당 신설이 가장 늦었음에도 가장 적은 수당 책정

수 당 명	최초 규정일	지급액
사서교사 수당	2017. 1. 6.	20,000원
영양교사 수당	2014. 1. 8.	30,000원
보건교사 수당	2002. . .	30,000원

4. 기타

⑤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 부처 내 요구내용 검토 경과
 - * 해당사항 없음
-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 * 해당사항 없음

참고1

수당 연혁자료

구분	비교대상수당 : 도서수당 (국회도서관 입법부 공무원)	조정요구수당 : (지방직)사서수당
시행당시	◦ '72.7.7. 국회공무원 제수당지급규정 (국회규정 제13호)에 최초 지정 ◦ 지급액 - 편찬편집사서 및 발간(타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3,000원	◦ '82.2.9., 제10723호에 최초규정 ◦ 지급액 13. 사서수당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사서직공무원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주요 인상연혁	<'93.12.27.> 종전대비 약 35% 인상 도서관장 370,000원 2급 200,000원 3급 190,000원 4급 168,000원 5급 117,000원 6,7급 94,500원 8,9급 84,000원 고용직공무원 75,000원	<'06.1.13.~현재>종전대비 인상 없음 특수행정분야 16.사서수당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03.5.22~현재.> 종전대비 약 32.5%인상 - 제4조(도서수당)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도서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5.7.22., 2018.12.28> 도서관장 444,000원 1급 351,000원 2급 260,000원 3급 247,000원 4급 218,000원 5급 152,000원 6,7급 132,000원 8,9급 113,000원 고용직공무원 105,000원 <'19.12.6 폐지>	<'24년도 수당조정 요구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152,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132,000원 이하

구분	비교대상수당 : (지방직)사회복지업무수당	조정요구수당 : (지방직)사서수당
시행당시	◦ '04.1.20. 제18235호에 최초규정 ◦ 지급액 23. 사회복지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 - 월 30,000원이하	◦ '82.2.9., 제10723호에 최초규정 ◦ 지급액 13. 사서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사 서직공무원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주요 인상연혁	<'10.1.7.> 종전대비 약100%인상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 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가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 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06.1.13.~현재> 종전대비 인상 없음 특수행정분야 16.사서수당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13.6.11.> 종전대비 66.7%인상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현재> 상동
	<'15.1.12.~현재> 종전대비 30%인상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4년도 수당조정 요구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152,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132,000원 이하

구분	비교대상수당 : 전산업무수당	조정요구수당 : 사서수당
시행당시	◦ '82.12.20. 제10957호에 최초규정 ◦ 지급액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82.2.9., 제10723호에 최초규정 ◦ 지급액 13. 사서수당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사서직공무원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주요 인상연혁	<~현재> 상동	<'06.1.13.~현재> 종전대비 인상 없음 특수행정분야 16. 사서수당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4년도 수당조정 요구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152,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132,000원 이하

구분	비교대상수당 : 교직수당(영양교사)	조정요구수당 : 교직수당(사서교사)
시행당시	◦ '14.1.8. 제25072호에 최초규정 ◦ 지급액 다. 교직 수당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가) 지급액: 월 3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17.1.6., 제27770호에 최초규정~현재 ◦ 지급액 다. 교직 수당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 월 20,000원
주요 인상연혁	<'20.1.7.~현재> 종전대비 최대 약166.7%인상 다. 교직 수당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가) 지급액: 월 3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현재> 상동
		<'24년도 수당조정 요구안> 다. 교직수당 9)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가) 월 100,000원